

## 29.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사건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판례집 15-1. 624>

###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은 같은 법 제5조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하 ‘신상공개제도’라고 한다),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은 그 제도문의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청신청인은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 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 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제청 신청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역시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분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법 제20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윤영철, 하경철, 김효중, 김경일 등 4인의 재판관은 합헌의견이었고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등 5인의 재판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인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인격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관에 의한 재판권 권리의 침해 여부, 적법절차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신상공개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그 입

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으로 기존의 형벌 이외에 수치형이나 명예형과 같은 별도의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법 제20조 제2항은 이미 공개된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인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 더 넓게 받고 있고, 특정 성범죄에 있어서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는바,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동질적인 비교집단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불법성의 차이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희 재판관은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하여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고 그 입법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라면 당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전제 하에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입법목적이 범죄인에게 창피를 주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위하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한다면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수치형과 유사하여 일반적인 행정제재와는 달리 범죄방지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징벌 및 위하의 효과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이 형벌과

상당히 중복된다고 보았다. 결국, 신상공개제도는 구체적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도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청소년 성매수자가 신상 공개되는 것은 일반 범죄자들 보다 죄질이나 법정형이 더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더 높아서가 아니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차별의 이유와 내용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찾을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의견을 밝혔다.

법 제20조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되었다.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이미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고, 그 공개의 범위도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자세히 명시되고 있으며, 이미 특정 유죄판결의 내용의 신상이 대중에게 일률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바, 법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신상공개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았으며, 법 제20조 제1항과 제3항 등 제 규정을 참조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가능하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희 재판관은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기간·절차 등은 단순히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내용으로서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 제5항이 그 기본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을 보지 않고 그 대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